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0,098,961	30,002,969
일반회계	932,871,317	27,986,140
특별회계	67,227,644	2,016,829
공기업특별회계	37,426,711	1,122,80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743,039	622,29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683,672	500,510
기타특별회계	29,800,933	894,02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10,124	123,3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37,391	88,122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70,056	11,10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225,250	66,758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729,647	111,8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43,297	7,299
도시개발특별회계	12,193	366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8,339	55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88,694	14,661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545,816	16,374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375,579	161,26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49,298	73,479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7,295,249	218,85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88,54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6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사"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